동 지침은, **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('20. 5. 6. 시행)에 근거**하여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대응지침(제9판)('20. 6. 25 시행)을 **어린이집 상황에 맞게**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(Ⅴ판)을 **수정·추가**한 내용입니다.
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유행대비
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Ⅴ-1판

2020. 7. 21.

보건복지부
(보육정책관)

목 차

Ⅰ. 개 요 ····· 1
1. 목적 ····· 1
2. 기본방향 ····· 1

Ⅱ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대응 조치사항 ····· 2

1.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····· 2
2.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····· 2
3. 어린이집 등원 · 출입 시 관리 강화 ····· 5
4. 유증상자 발견 시 조치사항 ····· 7
5. 시설 휴원관련 사항 ····· 8
6. 재개원 전 조치사항 ····· 8

Ⅲ. 지자체 협조사항 ····· 9

▷ 서 식 ◁

1. 재원아동 건강상태 모니터링 기록지(예시) ····· 10
2. 보육교직원 건강상태 모니터링 기록지(예시) ····· 11
3. 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감염 예방 관리 체크리스트 ····· 12

▷ 붙 임 ◁

1.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(3종) ····· 13
2.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: 마스크 착용 ····· 16
3.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: 환경 소독 ····· 17
4.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: 건강한 생활 습관 ····· 18
5.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: 에어컨 사용 ····· 19
6.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·동거인 생활수칙 ····· 20
7. 올바른 체온 측정 방법 ····· 22
8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신고 대상 ····· 24

※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_대응절차 지침상, 신고 대상 등의 기준 변경 시, 관련내용 반영예정

주요개정사항

목 차	구분	주요개정사항
2.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	(p.3) 추가	□ 환경위생 관리 ○ 어린이집 내 공기청정기 가동 기준 * 내부순환방식의 **공기청정기 가동은 제한**하되, 미세먼지 나쁨 등 **필요 시 필터 관리 및 환기에 철저를 기하고 가동**
	(p.4) 추가	□ 접촉의 최소화 * **휴원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**(단, 지역사회 감염 수준 등을 고려한 **휴원 지역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특별활동 등을 금지할 수 있음**)
	(p.5) 추가	□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관리 * **휴원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**(지역사회 감염 수준 등을 고려한 **휴원 지역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**)
3. 어린이집 등원·출입 시 관리 강화	(p.5) 추가	□ 등원 출근 중단 ○ **코로나19 확진**을 받은 경우 **음성확인서 제출 시까지 등원·출근 중단** * 다만 병원 등에서 격리해제 되었으나, **음성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격리해제일부터 2주후 출근 또는 등원 가능**
	(p.7) 수정	□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 확인 * 37.5℃ 이상의 발열, 기침, 호흡기 등 증상이 있으면서 ~~**관련된 약을 소지한 경우에도**~~ 다른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등원 불가 (이하생략)

Ⅰ 목적 및 기본방향

1. 목 적

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코로나19) 대응이 '사회적 거리 두기'에서 **'생활 속 거리 두기'로 전환**(5.6.) 되고, **어린이집 재개원**을 **대비**하여

○ **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**에 대해 코로나19 **예방 및 관리**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마련하여 **감염 위험**을 **최소화**

□ 그간의 어린이집 대응지침을 상황에 맞게 개정하여 **원장 및 보육교직원의 역할** 등을 제시함

◈ 코로나19 의 특성

- **증상**
  - 발열, 권태감, 기침, 호흡곤란 및 폐렴,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며 대부분 **경증이지만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**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
  - 그 외 인후통, 두통, 가래, 객혈과 오심, 설사도 나타남
- **전파 방법**
  - (비말전파)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,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(침방울)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됨
  - (접촉전파)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,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이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, 코, 입 등을 만져서 감염
- **전파 특성**
  ① 증상이 **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**가 일어나고, 전염력이 높고
  ② **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**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

2. 기본방향

□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가 다수 이용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**"코로나19 관리 체계"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**

□ 어린이집 원장은 **재원아동, 보육교직원 및 방문객 등의 코로나19 감염예방, 조기 인지 및 확산 방지 조치** 실시

* 「위생 · 청소/소독/환기 · 근무 환경 개선, 발열 등 주기적 모니터링 및 업무배제

□ 어린이집 내에서 코로나19 환자(의심환자 포함) **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**하고, **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**를 시행

Ⅱ 코로나19 대응 조치사항

1.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

○ 어린이집 내 감염관리체계 구성

- **감염관리책임자***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을 부여하고, 근무자 관리, 시설 환경관리,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

* **(감염관리책임자 역할)** 아동 및 보육교직원 **발열체크 등 건강상태 확인** 총괄, 감염예방 **교육**, 유증상 **아동 미등원 시** 매일 **유선으로 건강상태 확인** 등 **감염예방 활동 총괄**

- 재원아동, 보호자, 보육교직원 및 방문자 등 **명단 작성·보관**

* 주소, 연락처, 근무 시간 또는 방문시간 등

○ 원장은 의심환자(의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) 등 **발생 시** 즉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*과의 **비상연락체계 구축**

*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-관내 보건소-소방서- 선별진료소- 의료기관

- **가까운 선별진료소** 및 **진료의뢰 방법**을 미리 **파악**하여 유증상자 발생 시 **지체없이 대응**

2.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

□ 보육교직원, 재원아동 등 감염병 예방 교육·홍보

○ **보육교직원 대상**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**감염예방수칙, 행동요령, 생활속 거리 두기 실천 등 교육**

○ **재원아동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**에게 **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**이 있거나 **해외 및 코로나19 발생장소 여행력이 있는 경우 등원 중단 등 방침**을 **고지**하고 **게시판에 안내**

○ **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**(손씻기, 기침예절 등) 및 **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**(마스크 착용, 환경소독 등) 준수, **개인물품(예: 물병, 휴대폰 등) 사용, 위생관리,** 등 **개인 위생관리를 철저**히 하도록 감염병 예방 **교육**

- **관련 홍보물*을 어린이집 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안내**[붙임 1~5]

* **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www.kcdc.go.kr)에 게시된 자료 활용**

□ 어린이집 마스크 사용 기준

○ (보육교직원) 보육시간 내 아동 접촉 시, 보호자 포함 외부인 접촉 시 마스크 착용

* 면마스크, 덴탈마스크 등도 가능하나, 어린이집 내 유증상자 발생 시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

○ (아동)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님. 다만, 유아의 경우 노래·율동 등 집단활동 및 차량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권고

* 24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의견 (질병관리본부)

※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: 마스크 착용 편 참고(붙임2)

□ 환경 위생 관리

○ 어린이집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(비수동식 수도꼭지 등), 손 세척제(액체 비누, 알콜 70% 이상 손소독제 등)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

- 손 씻기후에는 종이타월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
- 어린이집 내 휴지를 비치하며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

○ 어린이집 내 마스크,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

○ 어린이집 내 주요 공간의 청소,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

※ 아동 등원 전, 하원 후 창문을 열어 환기, 보육시간 동안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 환기 양을 증가시킴

○ 어린이집 내 냉방기기 가동 시 ①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,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, 풍량(바람 세기 등)에 주의 ②환기가 가능한 시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,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실시 ③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, 바람 세기를 낮춰서 사용

- 밀집도가 높을수록 더 자주 환기 실시

* 내부순환방식의 공기청정기 가동은 제한하되, 미세먼지 나쁨 등 필요 시 필터 관리 및 환기에 철저를 기하고 가동

※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: 에어컨 사용 편 참고(붙임5)

□ 어린이집 방역(소독) 관리

○ (기본) 어린이집은 **매일 소독**하되, **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** 등은 수시 **소독** (서식3 참고 체크리스트 작성)

- 소독 시 **소독제 안전사용 수칙***을 준수

※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: 환경소독 편 참고(붙임3)

소독대상 물품	소독 시기
교재교구, 손소독제 용기, 체온계, 공기청정기, 의자, 탁자 등	**매일 업무 종료 후**
현관·보육실·화장실 손잡이, 계단 난간, 화장실 조명 스위치 등 자주 접촉하는 부분	**수시**

○ (어린이집 내 감염병 환자 및 접촉자 발생 시) **어린이집 일시 폐쇄 또는 휴원 후 소독업체 또는 방역당국**(보건소 등)**에 의뢰**하여 **즉시 소독** 실시

□ 접촉의 최소화

* **휴원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**(단, 지역사회 감염 수준 등을 고려한 **휴원 지역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특별활동 등을 금지할 수 있음**)

○ (보육프로그램 운영 시) 아동 및 교직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**악수 등 직접적인 신체접촉 및 외부활동 자제**

- (보육활동) 보육활동 시 **개별놀이 중심** 원칙, **불가피한 경우 아동간 접촉 최소화 강구**

- (특별활동) 진행하는 경우 **외부강사와 어린이집 구성원간 밀접 접촉 최소화**하도록 지도, 악기 등 **특별활동 도구 상호 교차 사용 금지**

* 반드시 외부강사 건강상태, 위험장소 방문 이력 등을 확인

- (외부활동)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경우 **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**하고 **밀폐도가 낮은 야외에서 진행**

* 특별활동 및 외부활동 진행 시 보호자 동의 필요

○ (급·간식 시) 식사 **전·후 손씻기** 철저, 식사시 어린이집 여건상 최대 범위 내에서 **일정 거리 유지**, 가능한 한 **일렬 식사 권장**

○ (집단 행사·교육 시) **가급적 자제**하되,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경우 **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을 준수**하고 **개인위생 및 건강상태 확인** 철저

□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관리

* 휴원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
(지역사회 감염 수준 등을 고려한 휴원 지역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)

○ 보육교직원 외 **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을 자제**하되,

- 불가피한 경우 (예시: CCTV 고장수리, 정수기 및 공청기 필터 관리, 보육실습, 적응 기간 동안 학부모 참관 등) **코로나 19 발생장소 방문 이력, 발열 확인,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**하여 **기록**

(1) **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출입 금지**

(2) **출입시**에는 **마스크 착용** 및 **손위생 실시, 보육실 출입 및 아동 접촉 최소화**

3. 어린이집 등원 · 출입 시 관리 강화

□ 등원·출근 중단

○ **코로나19 확진을 받은** 보육교직원 **또는 재원아동은 음성확인서 제출 시** 까지 등원·출근을 중단할 것

- 다만, 병원 등에서 격리해제 되었으나 **음성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** 어린이집은 건강취약계층인 영유아가 단체 이용하는 시설임을 감안 **격리해제일부터 2주후 출근 또는 등원 가능** (입원치료 통지서 및 격리 통지서, 입퇴원확인서, 퇴소확인서 등으로 기간 확인)

○ **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**이 나타난 **보육교직원 또는 재원아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**할 것

※ **가정통신문** 등을 통하여 **보호자가 인지**할 수 있도록 **사전 안내**

-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**어린이집(원장)에 연락**하고, **타인과의 접촉** 및 **외출을 자제**하고, **자택에서 3~4일간 경과 관찰**

⇒ **38도이상 고열이 지속**되거나 **증상이 심해지면** 콜센터, 보건소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으로 문의,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

○ **해외 또는 코로나19 발생 장소 여행력** 있는 보육교직원 **또는 재원 아동은 2주간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**할 것

- **동거인이 격리 면제 대상자**인 경우 **진단검사 결과 음성**일 시 출근 또는 등원 가능

- 또한 **동거인이 확진환자와 접촉**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동거인이 **자가격리 해제 시까지** 출근 또는 등원을 중단
- 위 경우 **보호자 및 교직원**이 구체적 내용을 **어린이집에 통보**토록 하여 어린이집 감염예방 신속 대응

○ **위 사항**으로 **업무배제된 보육교직원**은 **유급휴가 대상으로 인정** 및 **대체교사 지원 가능**

□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 확인

○ **등원 시 원장은** 보육교직원·아동에 대해 **건강상태 사전 체크** 후 **개인위생 준수**(마스크 착용, 손 씻기)하여 **출입토록 관리**

○ **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** 등에 대한 **발열검사* 실시**(1일 2회 이상 발열, 호흡기 증상 확인, 발열검사 실시 기준 참고) 및 기록 관리 (서식1,2)

- **통학차량 이용 아동**은 학생은 **탑승 전 발열검사** 실시

* 탑승 전 발열검사 실시로 교통 흐름 방해 유발 등을 양해하는 문구를 차량 뒤편에 부착

<어린이집 발열검사 실시 기준>

○ **실시대상 : 모든 아동 및 교직원**(어린이집에 출입하는 외부인 포함)
○ **실시장소** : **등원시**에는 어린이집 **실외, 보육시간 중**에는 **보육실 내**
ⅰ) 아동들이 **분산하여 등원**하도록 **출입 동선 지정**
ⅱ) 발열검사를 받기 위해 많은 아동들이 **모이는 것을 방지**
○ **실시주기 : 등원 시 1회, 보육시간 중 1회 이상** 실시하되 낮잠시간 전·후, 하원 전 등 실시시간은 **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조정**
○ **실시방법**
ⅰ) 발열검사는 **1차** 체온 측정 결과 **37.5℃ 이상 발열이 확인**된 경우 잠시 후 **재측정**
※ 발열검사 시 **고막체온계를 사용하는 경우 렌즈필터를 알코올 등으로 소독**하여 사용
ⅱ) 발열검사시 **호흡기증상(기침, 목아픔 등) 여부를 함께 확인**
○ **실시자 주의사항**
ⅰ) **발열검사 실시자**는 반드시 **마스크(KF80 이상) 착용**
ⅱ) **기저질환자 또는 임신부**는 발열검사 실시자에서 **제외**

⇒ **37.5℃ 이상의 발열, 기침, 호흡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**

(1) **(등원 시) 발열검사 과정**에서 위 증상을 확인한 경우 **마스크를 착용**시킨 후 **보육교직원**은 바로 **귀가 조치, 아동은 보호자에 인계, 귀가 조치**

*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더라도 **기침, 호흡기, 발열등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** 다른 아동의 안전을 고려하여 **등원 불가(귀가 조치)**, 다만 **체질상 기초체온이 높거나, 알레르기성 질환** 등 **아동의 특이체질에 기인**하고 **전염성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**하는 경우 **등원 가능**

(2) **(등원 후)** 유증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아래의 「**4. 유증상자 발견시 조치사항**」**에 따라 조치**

4. 유증상자 발견 시 조치사항

○ 어린이집 내 **유증상자 발견** 시 **마스크를 착용**시킨 후 **보육교직원**은 즉시 **귀가 조치, 아동**은 **보호자**에게 **연락**

○ **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오기 전**까지 **보건용마스크**를 씌우고, **확보된 격리공간**에서 **보육교직원과 동석**하여 **대기**하도록 함

* 동석하는 보육교직원은 보건용마스크, 일회용 장갑 등 **개인보호구 착용**, 및 **손위생 철저**히 준수

※ 어린이집 내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**격리공간(1인실 원칙)을 확보**하되, 별도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은 **원장실, 교사실 등을 활용**, **인근 시설의 유휴 공간 활용**도 가능

○ **보호자에게 연락** 시 보호자가 원하거나 **동의하는 경우 원장 또는 교사가 보호자가 지정하는 병원 동행**, 아동이 진료받도록 함 (보호자 지정 병원이 없을 경우 어린이집 지정병원 이용, 대중교통 이용 자제)

○ 유증상자의 이송 이후에는 **격리 장소를 소독**

○ 진료결과 코로나19 **(의심)환자와 접촉**한 보육교직원·재원아동에 대한 **모니터링**(서식 1,2)

- 의심환자와 접촉한 보육교직원 및 재원아동은 의심환자의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등원중단·자가격리하며,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업무(등원) 복귀
- 단, 자가격리 시 발열, **호흡기 증상**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있는지 확인하여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, **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토록 안내** 조치

◈ (참고) 코로나19 행동수칙 中 [유증상자]

1. **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,**
2. **집**에서 **충분히 휴식**을 취하시고 **3-4일 경과를 관찰**하여 주십시오.
3. **38도 이상 고열**이 지속되거나 **증상이 심해**지면 ① 콜센터, 보건소(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.
4. 의료기관 방문시 **자기 차량**을 이용하고 **마스크 착용**하십시오.
5. 진료 의료진에게 **코로나19 발생 국가·지역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** 여부를 알려주세요

5.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폐쇄 · 휴원 기준

□ 일시폐쇄

○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**확진자 또는 접촉자**인 경우 시·군·구청에 신고, **시설 일시폐쇄(출입금지) 조치**

* **격리해제 후 PCR 재검출자(재양성자) 발생 시는 일시폐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** (방역대책 본부 지침)

- **(확진자 발생 시)** 확진일로부터 14일간 또는 원내 접촉자가 모두 음성 판정 또는 격리해제 시까지
- **(접촉자 발생 시)** 접촉자 최종 음성 판정 또는 격리해제 시까지

□ 휴원

○ 각 지자체별로 확진 규모·범위·추이 등에 따라 휴원 실시 가능

- **휴원 시 긴급보육을 제공**하고, 등원중단·업무배제, 발열체크, 외부인 출입 자제, 소독 등 **감염예방 조치 철저** 등 지속 시행

6. 재개원 전 조치사항

□ 방역 및 감염예방 이행사항 재점검

○ 어린이집 재개원을 위해 ① **감염 예방 관리** 체크리스트(서식3)에 따른 점검 사항 **재확인**, ② **방역물품** 충분히 **확보**, ③ **등원 예정**

아동 건강상태 유·무선 **확인,** ④ **학부모 대상** 개인 위생수칙, 부모가 준수할 사항, 어린이집 방역관리 사항 등 가정통신문, SNS 등을 통해 **사전안내,** ⑤ **장기간 미이용 시설**(놀이터 등) **청결 관리** 등 사전 준비 철저

Ⅲ 지자체 협조사항

□ **(현장 모니터링)** 지자체는 **어린이집 대응지침 준수여부** 등 점검·이행 여부 모니터링 지속 실시 (서식3 참고)

○ **(감염관리책임자)** 시설내 건강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도록 조치 필요

○ **(보고체계 구축)** 어린이집 내 의심환자 등 **상황 발생 시 즉시** 보고토록 **어린이집, 관할 시군구 및 시도, 보건복지부간 보고 체계 구축(매일)**

○ **(격리시설 마련)** 어린이집 내 유증상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**격리 공간(1인실 원칙)**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

- **격리실** 별도 구비가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집은 **원장실, 교사실 등을 활용**하되, **인근 시설의 유휴 공간 활용**도 가능

○ **(감염병예방 관리현황 확인)** 지자체는 어린이집에서 **발열체크 및 소독, 환기** 등이 **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조치**

□ **(시설휴원 시)** 지자체는 어린이집이 **긴급돌봄이 원활히 유지**되고, 필요시 **부모돌봄 관련 지원사항이 안내**되도록 **조치** 필요 및 지속 모니터링

* 근로자인 보호자는 **가족돌봄휴가제도**, **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**사용 가능, **아이돌봄지원사업** 이용도 가능

서식 1	재원아동 건강상태 모니터링 기록지(예시)

* 등원 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콧물, 기침)등 이 있는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귀가 조치가 필요합니다. (보건복지부)

발열 체크리스트			
일자		건강관리책임자	(서명)

아 동 명	체크시간	체온	기침여부	조치사항
(예시) ooo	*08:50* *14:20*	*36.5* *36.5*	*부*	*-*
△△△	*09:00* *14:00*	*36.5* *37.5*	*부*	*모에 즉시 유선 통보 하고 원장실에 격리 후 모에 인계(15:00)*

※ 해당 서식을 참고로 등원 시, 의심환자와 접촉 시, 외부인 출입 시 등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수정 사용

서식 2	보육교직원 건강상태 모니터링 기록지(예시)

* 출근 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콧물, 기침)등 이 있는 경우 즉시 등원 중단 및 귀가 조치가 필요합니다. (보건복지부)

발열 체크리스트			
일자		건강관리책임자	(서명)

교직원명	체크시간	체온	기침여부	조치사항
(예시) ooo	*08:50* *14:20*	*36.5* *36.5*	*부*	
△△△	*09:00* *14:00*	*36.5* *37.5*	*여*	*귀가조치*

※ 해당 서식을 참고로 등원 시, 의심환자와 접촉 시, 외부인 출입 시 등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수정 사용

서식3	코로나19 대응 어린이집 감염 예방 관리 체크리스트

○ **확인일시:** 20 년 월 일 (요일) 시

○ **확 인 자:** 소속_____ 이름_____(서명)

체크리스트		해당란에 ○ 표시		비고
		예	아니오	
협력체계(1)				
• 비상연락체계 (격리시설–관할 보건소–관할 시·군·구 및 시·도)	마련 및 현행화 하였는가			
	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			
인력 배치 및 관리(4)				
• 감염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가				
• 모든 아동 및 보육교직원에 일일 건강체크를 시행하고 있는가 (발열, 호흡기증상 등)				
• 모든 아동 및 보육교직원 대상 감염병예방관리 교육을 수행하였는가				
• 격리실이 구비되어 있는가				
위생 및 방역 관리(4)				
• 어린이집은 자체 소독 지침에 따라 매일 소독하고 있는가				
• 어린이집은 수시로 환기를 하고 있는가				
• 손세척제와 휴지등이 충분히 비치되어 있는가				
• 어린이집 내 마스크, 체온계 등 감염예방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하고 있는가				
기타 특이사항				
(자유기술)				

붙임1	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(3종)

질병관리본부
KCDC

		새	로	운		일	상		
생	활		속		거	리		두	기

아프면 3~4일 집에 머물기

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

'실내 다중이용시설' 및 '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'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

30초 손씻기, 기침은 옷소매

매일 두 번 이상 환기, 주기적 소독

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

코로나19를 이기는 새로운 일상,
우리가 함께 만들어갑니다.

2020.05.06.

아프면 3~4일
집에 머물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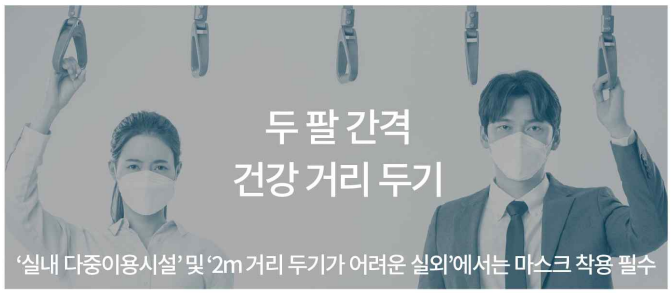
두 팔 간격
건강 거리 두기
'실내 다중이용시설' 및 '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'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

생활 속
거리 두기
새 로 운 일 상
질병관리본부
KCDC

30초 손씻기,
기침은 옷소매

매일 두 번 이상 환기,
주기적 소독

거리는 멀어져도
마음은 가까이

2020.05.06.

01 아프면 3~4일 집에 머물기

02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*

03 30초 손씻기·기침은 옷소매

04 매일 2번 이상 환기·주기적 소독

0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

* '실내 다중이용시설' 및 '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'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수

질병관리본부
KCDC

붙임2	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: 마스크 착용

<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: 마스크 착용 >

1 마스크 착용 일반 원칙 및 올바른 착용 방법

<일반 원칙>

- 마스크 착용보다 손 씻기, 사람 간의 거리 두기 등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더 효과적이며 중요합니다.
- 마스크는 침방울을 통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
-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,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·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며, 보건용·수술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면마스크 착용도 도움이 됩니다.

<올바른 착용 방법>

- 개인의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선택하여 호흡기인 코와 입을 완전히 덮도록 얼굴에 잘 밀착해 착용합니다.
- 마스크 자체가 오염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.
- 마스크 착용 시에는 손을 통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습니다. 만졌다면,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.
- 마스크 사용 후에는 마스크 앞면에 손을 대지 않고 벗습니다.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아무 곳에나 두지 말고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손을 씻습니다. 면마스크의 경우 제품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자주 세탁합니다.
-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차단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-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인에 한하여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
2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.

-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(KF 94 이상)
- 기침, 재채기, 가래, 콧물,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
- 의료기관, 약국, 노인·장애인 시설 등을 방문하는 경우
- 많은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

  예) 판매원, 요식업 종사자, (창구)상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, 대중교통 운전기사, 역무원, 우체국 집배원, 택배기사, 대형건물 관리원 등
- 건강취약계층, 기저질환자 등이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(예: 군중모임, 대중교통 등)

  * 건강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 : 노인, 어린이, 임산부, 만성질환자 등

  *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: 만성 폐질환, 당뇨, 만성 신질환, 만성 간질환, 만성심혈관질환, 혈액암, 항암치료 암환자,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
-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,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

3 다음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.

-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야외에서나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경우 착용을 권고하지 않습니다.
- 24개월 미만의 유아,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,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.

붙임3	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: 환경 소독

<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: 환경 소독 >

1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

- ㅇ 적절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.
- ㅇ 소독 시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.
- ㅇ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은 적절한 개인보호구(일회용 장갑, 마스크, 필요시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)를 착용해야 합니다.
- ㅇ 환경부의 승인 또는 신고된 소독제 중 적절한 제품(소독제 티슈, 알코올(70% 에탄올), 차아염소산나트륨(일명 가정용 락스) 희석액 등)을 사용하며, 소독제를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권고사항을 반드시 준수합니다.
  - 차아염소산나트륨(일명 가정용 락스)을 사용하는 경우 소독 직전 희석하여 준비(500~1,000ppm 희석액 등)하고, 희석액을 천에 묻혀 문지르고 10분 이상 그대로 두었다가 깨끗한 물을 적신 천으로 다시 한 번 닦아냅니다.
    - * (500ppm 희석액) 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륨(일명 가정용 락스) 원액 5ml를 붓고(예, 생수통 1/2 뚜껑)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
    - * (1,000ppm 희석액) 빈 생수통 500ml에 차아염소산나트륨(일명 가정용 락스) 원액 10ml를 붓고(예, 생수통 1 뚜껑) 냉수를 통 가득 채우고 섞음
- ㅇ 소독 시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(또는 소독제 티슈)을 이용합니다.
  -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는 방법은 사람에게 흡입되어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. 또한, 소독제를 분사하고 닦지 않는 경우에는 분사 표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, 소독 효과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ㅇ 소독을 마친 후에는 사용한 장갑을 벗고 물과 비누로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.

2 가정, 사무실 등 일상적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.

- ㅇ 소독 시에는 손이 자주 닿는 곳(전화기, 리모콘, 손잡이, 문고리, 탁자, 팔걸이, 스위치, 키보드, 마우스, 복사기 등)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소독합니다.
- ㅇ 아이들의 손이 닿는 장난감 등은 소독 후 소독제가 묻어 있는 채로 입과 손에 닿아 위험하지 않도록 깨끗한 천으로 닦아 건조한 후에 사용합니다.

3 공공장소 등 여럿이 오가는 공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환경소독 합니다.

- ㅇ 소독 시에는 여러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(손잡이, 난간, 문고리, 팔걸이, 스위치 등)을 중심으로 합니다.
- ㅇ 건물의 출입문, 승강기 버튼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많은 곳은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합니다.
- ㅇ 시설 관리자는 청소・소독 담당자에게 청소,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 (소독제, 종이 타월 및 마스크 등)을 충분히 제공하도록 합니다.

※ 그 외 소독 관련 세부 안내사항은 "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대응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" 최신지침(2020.4.2.기준 [제3-1판]) 을 참조하세요.

붙임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: 건강한 생활 습관

<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: 건강한 생활 습관 >

1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가져봅니다.

- ㅇ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건강증진과 체력향상 외에도 여러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도와줍니다.
  - 깨어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서 보내는 여가 시간(컴퓨터, 스마트폰 사용, 텔레비전 시청 등)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.
- ㅇ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신체활동과 운동은 필요합니다. 실내에서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는 등 혼자 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.
- ㅇ 신체 활동 강도를 높이면 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환기를 합니다.
- ㅇ 어르신이나 질환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는 체력, 신체조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만큼 신체활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.
  - 갑작스런 신체활동 및 운동은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도록 합니다.

2 정기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천합니다.

- ㅇ 고혈압, 당뇨, 심뇌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는, 담당 의사와 상담하고 지속적으로 진료받으세요.
- ㅇ 응급상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.
- ㅇ 적정 시기에 예방접종을 맞고, 정기 검진을 하는 등 주기적인 건강관리를 하면,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3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합니다.

- ㅇ 평소에 바람직한 식생활을 실천하여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하면,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- ㅇ 다양한 식품을 건강한 조리법으로 골고루 섭취하고, 물을 충분히 마십니다.
- ㅇ 아침밥을 꼭 먹는 것이 좋으며, 덜 짜게, 덜 달게, 덜 기름지게 먹습니다.

4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ㅇ 누구나 감염병에 대한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. 가족, 친구, 동료와 소통하며 힘든 감정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.
- ㅇ 믿을만한 정보에 집중하세요. 잘못된 정보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올바른 판단을 방해합니다.
- ㅇ 힘든 감정은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, 과도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(일반인 및 격리자 : 정신건강복지센터 ☎ 1577-0199), 확진자 및 가족 : 국가트라우마센터 ☎ 02-2204-0001~2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붙임5	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: 에어컨 사용

1 일반원칙

○ **(기본 방향)** 에어컨 사용 시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환기, 풍량에 주의하여 사용하기

○ **(환기)**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공기가 오래 머물게 되면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신선한 외부 공기로 환기를 자주하기

○ **(풍량)** 에어컨 바람이 사람의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, 바람의 세기를 낮춰서 사용하기

2 다중이용시설 사용시

○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,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

○ 환기 시에는 가급적 자연환기 하며, 창문을 개방하여 맞통풍하기

○ 자연환기가 아닌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에 외부공기 도입량을 가능한 높게 설정하여 최대한 외부공기로 환기하기

○ 기계환기를 하는 경우에도 자연환기가 가능하면 병행하기

○ 에어컨 바람의 방향은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게 하며, 바람의 세기는 약하게하기

○ 에어컨의 가동하면서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은 내부공기 재순환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하기

○ 에어컨 필터는 기기 매뉴얼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하기

○ 에어컨 필터 청소 또는 교체 시에는 마스크, 장갑 등 기본적인 방호조치 하에 실시하고, 완료 후 손 씻기 등 위생수칙을 준수하기

○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에서 에어컨을 사용할 때에는

-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,
- 시설 내의 소독을 자주(최소 일 1회 이상) 실시하며,
- 유증상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도록 사전안내, 출입관리를 강화하기

3 **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유행지역의 경우,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시설은 가급적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기**

붙임6	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 · 동거인 생활수칙

질병관리본부
KCDC

www.cdc.go.kr 질병관리본부

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

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장소 외에 외출 금지

※ 자가격리대상자는 "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"에 따라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.
제79조3(벌칙)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

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

-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
- 식사는 혼자서 하기
-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
(공용으로 사용 시,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)

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(담당공무원)에 먼저 연락하기

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

- 불가피할 경우,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서로 2m이상 거리 두기

개인물품(개인용 수건, 식기류, 휴대전화 등) 사용하기

-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
- 식기류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

건강수칙 지키기

- 손씻기,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
-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
- 마스크가 없을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 기침하기, 기침 후 손씻기·손소독 하기

'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' 의무적으로 설치

※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
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되고,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격리 조치됩니다.
(시설이용 비용은 자부담할 수 있음)

능동감시 기간 동안 관할 보건소(담당공무원)가 연락하여 증상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.
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가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자가모니터링 방법

-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확인
- 매일 아침, 저녁으로 체온 측정하기
- 보건소(담당공무원)에서 1일 1회 이상 연락 시, 감염 증상 알려주기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주요 증상

- 발열(37.5℃ 이상)
- 기침, 호흡곤란
- 오한, 근육통, 두통
- 인후통
- 후각·미각 소실
- 폐렴

2020.5.13.

질병관리본부
KCDC

www.cdc.go.kr 질병관리본부

자가격리대상자 가족·동거인 생활수칙

-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
  - 특히 노인, 임산부, 소아, 만성질환,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분은 접촉 금지! • 외부인 방문 제한
- 불가피하게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 이상 거리 두기
-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,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 시키기
-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을 자주 씻기
-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(식기, 물컵, 수건, 침구 등) 구분하여 사용하기
  - 자가격리대상자의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
  -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사람 사용 금지
- 테이블 위, 문 손잡이, 욕실기구, 키보드, 침대 옆 테이블 등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의 표면 자주 닦기
-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
- 자가격리대상자의 동거인(가족 등)이 많은 사람과 접촉 및 집단시설* 관련 종사자는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일까지 스스로 업무제한 권고

*집단시설 : 학교, 학원, 어린이집, 유치원, 사회복지시설, 산후조리원, 의료기관 등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주요 증상

✔발열(37.5℃ 이상) ✔기침, 호흡곤란 ✔오한, 근육통, 두통 ✔인후통 ✔후각·미각 소실 ✔폐렴

2020.5.13.

붙임7	올바른 체온 측정 방법

□ 체온을 측정하는 시기

○ 운동 및 샤워 후, 먹고 마신 후나 실내외의 온도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 등에는 신체가 안정되도록 30분 정도 경과한 후 측정합니다.

□ 체온을 측정하는 방법

○ 귓속형 체온계 사용 주의사항

- 정확한 온도 측정은 귀를 뒤로 당겨 일직선이 되도록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.
- 측정용 필터가 일회용인 경우 반드시 측정 대상자마다 새로운 필터로 교환 사용하거나 알콜솜으로 깨끗이 닦은 후 사용해야 합니다.
  ※ 타인이 사용한 필터를 사용하면 중이염 등 감염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
- 수영이나 목욕 등으로 귀가 젖었을 때는 귀에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귓속형 적외선 체온계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.
- 귀지가 많거나 외이도가 작은 경우, 귀 감염이 있는 경우 등은 온도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- 아동이 몸부림을 칠 경우 피부와 센서간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 측정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진정시킨 후 측정합니다.

○ 비접촉식 체온계 사용 주의사항

- 센서를 이마 중앙에 오도록 해야 하고 기기를 2~3cm 떨어뜨려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.
- 이마에 땀이 나면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땀을 닦고 측정합니다.

□ 기타사항

○ 건강한 성인과 어린이의 정상 체온은 36.1℃ ~ 37.2℃이며 평균 정상 체온은 37.0℃입니다.

○ 신진 대사율이 높은 아이들의 체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.

- 배란중인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체온이 0.5℃ 높아질 수 있습니다.
- 65세 이상 성인은 대사율이 낮아 체온이 0.3℃ 더 낮을 수 있습니다.

○ 계절이나 하루 중 시간대에 따라 체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- 체온은 잠을 자는 오전 3시에 가장 낮고 바쁜 하루를 보낸 후 오후 6시에 가장 높습니다.
- 정확한 판독을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

붙임8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신고 대상

□ 아래 환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

< 신고 대상 >

○ (확진)	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		
○ (의사)	최근 14일 이내에 **확진환자와 접촉**한 자	+	**발열(37.5℃이상) 또는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** 나타난 자
○ (조사)	최근 14일 이내에 **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** 방문	+	
○ (조사)	최근 14일 이내에 '국내 집단발생' 과 역학적 연관성	+	
○ (조사)	**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**		